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운동 확대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4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에 대해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허용	3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해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대답 허용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9.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및 확성 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위하여 확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에 대해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허용(안 제64조 제1항 등)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illegible]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
 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
 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
 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
 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
 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
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
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
합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
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
 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
 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
 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
 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
 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
 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
 다.

<신 설>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
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
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
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
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
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
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
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
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
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
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

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해
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 성명 · 학력 · 경력과 소속정
당의 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
지에 인쇄할 정당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및 정강 정책 그 밖의 홍
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작
성 · 첩부하되 그 수량은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2항에 따라 候補者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數量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별(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

-----.

④ -----제3항-----

-----.

-----.

⑤ -----제3항-----

-----.

⑥ 제3항-----
-----.

-----.

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선거벽보에 다른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私生活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誹謗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告發하고 公告하여야 한다.

⑧ 선거벽보를 印刷하는 印刷業者는 第3項의 선거벽보의 數量외에는 이를 印刷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⑨ 候補者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첨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첨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

-----제3항-----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

-----.

⑨ -----제4항-----

-----.

⑩ -----

-----제4항-----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제1항 및 제2항-----

地・建物 그 밖의 시설물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⑫ (생략)

⑬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별(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⑭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64조제3항 후단부터 제9항까지-----
-----.

-----.

⑭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4조제4항·제9항-----

-----.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選舉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 8. (생략)

③ ~ ⑥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⑨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64조제1항·제2항·제10항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략) 5. <u>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64조제9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6. ~ 12.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 지역구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추천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행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폐쇄형 정당명부제¹⁾로 운영되어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므로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은 지역구의원선거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만약 비례대표의원선거에 개방형 명부제²⁾를 채택한다면 선거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후보자의 인물, 정견, 신념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선거벽보 작성 및 현수막 게시 필요성이 증

1) 폐쇄형(Closed list system)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자가 정당(의 명부)에만 투표하는 방식임.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비례대표당선인은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명부 상의 순위에 따라 결정함.

2) 개방형(Open list system)은 현재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덴마크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면서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라 선거벽보 첩부 및 현수막 게시가 과도하게 늘어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각각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및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기준 전국 43,289곳 및 42,472곳에 259,229장 및 86,239장의 선거벽보가 추가로 첩부될 것으로 보았고,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및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기준 각각 42,672개 및 13,796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전국 83,630곳에 3,177,940장의 선거벽보가 추가로 첩부될 것으로 보이고 270,788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입법 시 추가 선거벽보 및 현수막>

1. 선거벽보 첩부수량

선거명	선거구	선거 참여 정당 (A)	법정기준	
			첩부장소수 (B)	첩부수량 (A*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전국	38	83,630	3,177,94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	17개 시도	9	43,289	259,2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	226개 구시군	8	42,472	86,239

2. 현수막 게시수량

선거명	선거구	선거 참여 정당 (A)	법정기준	
			읍면동수* (B)	게시수량 (A*B*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전국	38	3,563	270,78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	17개 시도	9	3,563	42,67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	226개 구시군	8	3,496	13,796

* 제8회 지방선거의 읍면동 현황이 확인 불가하여, 제22대 국선 현황을 기준으로 일괄 계상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가 지역보다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점, 선거운동 주체 확대에 따른 인쇄물·현수막 등 난립이 국민의 일상생활 평온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해 공개장소에서의 연 설·대답 허용(안 제79조제1항 등)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 ① 후보자(<u>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 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 을 할 수 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 ① ----- <u>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천정 당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 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 할 수 있다.	③ ----- ----- ----- ----- -----.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u><신설></u> ④ ~ ⑫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u> <u>후보자와 선거사무소마다 각 1대</u> <u>· 각 1조</u> 3. (현행과 같음) <u>3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 <u>후보자마다 1대 · 1조</u> ④ ~ ⑫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장소에서 확장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고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봄.

첫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구의원선거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의 유권자에게 정당의 정강 등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허용 시, 각 정당은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인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여러 번 연설·대담을 하도록 지원한 결과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관리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둘째, 비례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악용가능성을 고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의 유권자에게 정당의 정강 등을 알려야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 각 정당은 정강이나 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자신들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인원의 후보를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여러 번 연설·대담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 결과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선거관리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위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법목적에 달성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등)

할 필요가 있음. 가령, 비례대표의원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하는 외에 특정 지역구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함께 수행하는 등 편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가 지역보다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는 점, 비례대표 후보자 대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법 §91
말·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59 법 §82의4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